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2005. 8. 5 고시 제 248 호
개정 2007. 2. 26 고시 제 68 호
개정 2008. 2. 27 고시 제 93 호
개정 2008. 4. 16 고시 제 46 호
개정 2009. 8. 21 고시 제 754 호
개정 2010. 2. 3 고시 제 56 호
개정 2010. 9. 1 고시 제 602 호
개정 2010. 12. 30 고시 제 1018 호
개정 2012. 12. 5 고시 제 848 호
개정 2013. 4. 22 고시 제 147 호
개정 2013. 6. 28 고시 제 384 호
개정 2014. 5. 22 고시 제 288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경력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자가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협의회 및 경력관리위원회

제3조(경력관리기관 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력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건의 할 수 있다.

1. 통일된 경력관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간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한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사항
3. 각 수탁기관별 경력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경력관리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6. 신고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수탁기관의 상근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세부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간사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기술인력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각 수탁기관의 경력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4조(경력관리위원회) ① 수탁기관은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또는 7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제5조(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①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

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④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제6조(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5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7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부표 2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4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

제7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

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2. 계약서 사본
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

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③ 건설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④ 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⑤ 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군경력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인정한다.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시설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⑦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⑧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7조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건설기술자가 법 제21조제1항,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10조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⑩ 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기술자가 국외경력을 제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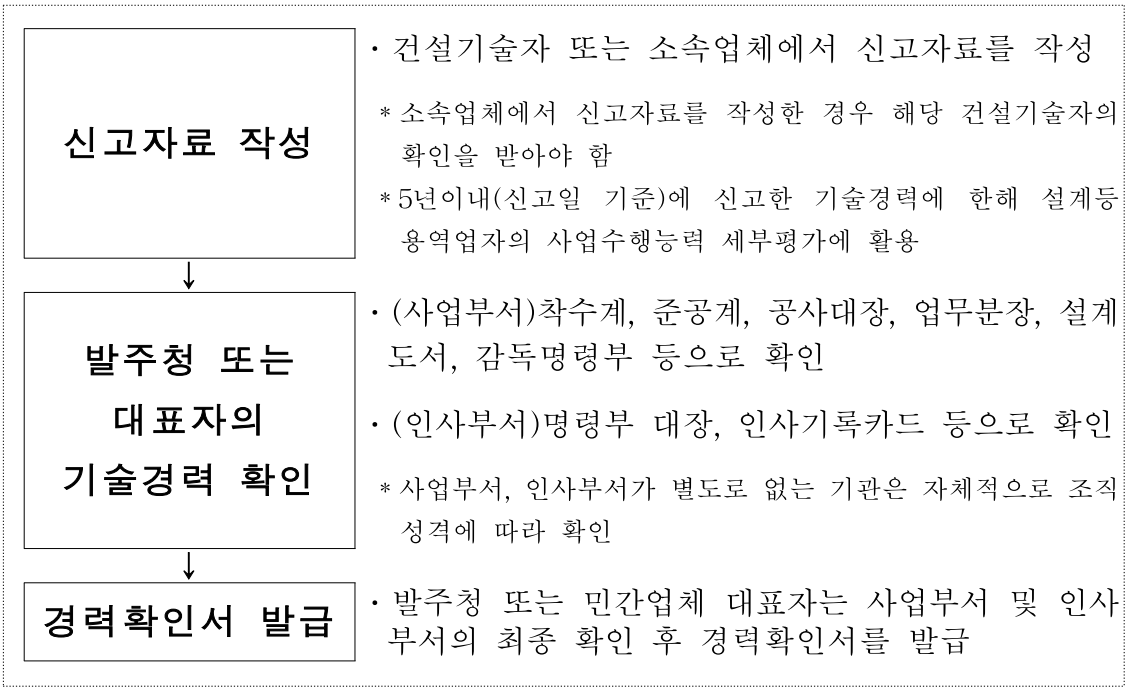

제11조(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건설기술자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제12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1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분야와 제7조 별표 3 제3호 가목의 건설공사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11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③ 제11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신고 자료(제9조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정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 건설기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3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신고 자료를 송부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신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5장 신고자료의 검증, 경정 및 증명서 발급

제15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건설기술자는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경정의 신청) ① 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국외경력은 제8조제11항에 따라 신고된 것을 말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기획재정부 또는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규정에 따른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발급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증명서 발급 등) ① 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

② 건설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 건설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경고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활용하는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 참여일수와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이하 “임의경력”이라 한다)을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경력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 분야별 참여일수 및 비건설 경력증명서에 따른다.

제20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제21조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① 법 제82조제2항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참여기술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적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고용정보 등 법 제26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햐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참여기술자 현황 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

명서 건설사업관리 경력란에, 그 외 참여 경력은 기술경력란에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④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5. 8.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인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학과, 경력 또는 기술등급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경력관리를 위한 사항의 폐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정한 경력관리 세부사항은 2005년 10월 1일자로 모두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7. 2.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이 부칙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임의신고자 중 종전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가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의신고자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본다.

제3조(건설기술자 직무 및 전문분야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의 건설기술자 신고경력(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경력을 말한다) 중 미신고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할 경우 직무 및 전문분야 등급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설기술자 전문분야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중 "생산기계"는 개정규정에 의한 "컴퓨터응용가공"으로, "공업계측제어"는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계측제어"로, "건설재료시험"은 개정규정에 의한 "토목품질시험"으로, "소방설비"는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으로, "공정관리"는 개정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로, "방직"은 개정규정에 의한 "섬유물리" 또는 "섬유화학"으로 본다.

제5조(신고된 자료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건설기술자 신고경력(근무처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하며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신고경력 및 기술등급을 종전규정에 의한 신고경력 및 기술등급으로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08. 2.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직무분야 경력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후 감리전문회사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신고(정정신고를 포함한다)할 경우 직무분야의 등급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력·경력자인 감리원의 수석감리사 인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영 부칙 제7조와 종전 규정 제24조에 따라 학력 및 경력에 의해 수석감리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종전 고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08. 4.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2.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 제8조 및 제11조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학과 및 해당 직무분야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및 직무분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건설기술자 전문분야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중 “건축설비”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로, “산업안전”은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으로, “대기환경”은 개정규정에 의한 “대기관리”로, “수질환경”은 개정규정에 의한 “수질관리”로 본다.

제4조(건설공사업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업무 중 “시공관리책임자”로 담당업무를 신고한 건설기술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활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신고하는 기술경력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당업무 중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및 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별표 2 제5호 나목 비고 4.의 품질관리자 개정 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신고하는 기술경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당업무 중 비상주감리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설기

술관리법령에 의한 비상주 감리로 신고한 담당업무는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감리로 본다.

제4조(외국인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제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2. 1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및 기술등급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사실을 신고(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의 등급을 산정(법 제6조제2항 및 종전 영 제7조제3항제1호 나목에 의한 교육훈련 규정을 적용한 산정을 말한다)한다.

부 칙(개정 2013. 4.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6.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 통합 및 등급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무 및 전문분야는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 및 설비
금속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전자	산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토목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토목	토질·지질
	철도 철도보선		철도·삭도
	토목품질시험 콘트리트		토목품질관리
건축	건축품질시험	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설계		건축계획·설계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광업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광산보안
	지하수	토목	수자원개발
국토개발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통	교통		교통
국토개발	조경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국토개발	지적	토목	지적
환경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환경	자연·토양환경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관리	건설지원	건설마케팅
	승강기	기계	승강기
화공및세라믹	화공	건설지원	건설마케팅
섬유	섬유		
해양	해양	환경	해양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된 직무 및 전문분야(제1항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말한다)의 등급은 다음표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새로이 산정한 등급이 종전 분야의 등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표 산정방법 기등급 인정분야 중 최상위 등급을 인정한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산정방법
기계	일반기계	- (전문분야) 컴퓨터응용가공분야 경력과 일반기계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컴퓨터응용가공 또는 일반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 (전문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경력과 건축기계설비분야 경력(기계분야를 말한다)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축기계설비(기계분야)
	승강기	- (직무분야) 종전 산업응용분야의 승강기분야 경력과 기계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승강기 또는 기계 - (전문분야) 종전 산업응용분야의 승강기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승강기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 (직무분야) 종전 금속분야 경력과 안전관리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금속 또는 안전관리 - (전문분야) 종전 금속분야의 비파괴검사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비파괴검사
전기・전자	-	- (직무분야) 종전 전기분야 경력과 전자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전기 또는 전자
	철도신호	- (전문분야) 종전 전기분야의 철도신호분야 경력과 전기철도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철도신호 또는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 (전문분야) 종전 전기분야의 건축전기설비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 (전문분야) 종전 전자분야의 산업계측제어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산업계측제어
토목	토질・지질	- (전문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지질 및 기반분야와 응용지질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또는 응용지질
	철도・삭도	- (전문분야) 철도분야 경력과 철도보선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철도분야 또는 철도보선
	토목품질관리	- (전문분야) 토목품질시험분야 경력과 콘크리트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토목품질시험 또는 콘크리트
	수자원개발	- (직무분야) 종전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분야와 토목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지하수 또는 토목 - (전문분야) 종전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지하수

	지적	- (직무분야) 종전 국토개발분야의 지적분야 경력과 토목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지적 또는 토목 - (전문분야) 종전 국토개발분야의 지적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지적
건축	건축품질관리	- (전문분야) 건축품질시험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건축품질시험
	건축계획·설계	- (전문분야) 종전 건축분야의 건축설계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건축설계
광업	-	- (직무분야) 종전 광업자원분야 경력 중 지하수분야를 제외한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광업자원
도시·교통	-	- (직무분야) 종전 국토개발분야의 도시계획분야 경력과 교통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도시계획 또는 교통
조경	-	- (직무분야) 종전 국토개발분야의 조경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조경
환경	자연·토양환경	- (전문분야) 토양환경분야 경력과 자연환경관리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토양환경 또는 자연환경관리
건설지원	건설마케팅	- (직무분야) 종전 산업응용분야 중 승강기를 제외한 경력, 화공 및 세라믹분야 경력과 섬유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공장관리, 품질관리, 화공 및 세라믹 또는 섬유 - (전문분야) 종전 산업응용분야의 공장관리분야 경력, 품질관리분야 경력, 화공 및 세라믹분야의 화공분야 경력과 섬유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공장관리, 품질관리, 화공 또는 섬유

환경	해양	- (직무분야) 종전 해양분야 경력과 환경분야 경력을 합산한다. - (기등급 인정분야) 해양, 환경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학과의 직무분야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영 제4조 별표 1 제3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또는 졸업하거나 이수하여 신고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는 부칙 제2조를 준용하여 영 제4조 별표 1 제4호에 의한 직무분야로 본다.

제4조(보일러산업기사 신고자의 직무분야 인정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 영 제4조 별표 1 제3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보일러산업기사”를 취득하여 이를 신고한 후 직무분야 기계를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기계로 인정한다.

제5조(해외경력 보정계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해외경력에 대하여 제7조 별표 3 제2호 다목 6)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학과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학과로 본다. 다만, 종전 제5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 신청)에 따라 인정받은 석·박사 과정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중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2)의 가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경력자 신고 학력 및 경력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자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 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다음표와 같으며 그 외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항목	산식 또는 주기	배점
경력	$(\log N / \log 40) \times 100 \times 0.4$ *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40
자격	-	10
학력	-	10
교육	35시간마다	1

제8조(지적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측량 및 지적경력 인정규정에 대하여는 기술정책과-531(2011.2.8)에 따라 지적분야는 지적관련 자격종목(지적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및 기능사) 취득이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교육지수 적용례) 제7조 별표 3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이수한 교육훈련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및 등급 /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 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메카트로닉스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 접 전산응용기계제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연 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 형 기계가공조립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전 기· 전 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전 기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토 목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 도		응용지질 철도토목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철도토목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 적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지 적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석 공 건설재료시험 측 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 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거푸집 건축도장 도 배 실내건축 미 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취급 시 추
도시· 교통	도시계획 교 통		도시계획 교 통	 교 통	
조 경	조 경		조 경	조 경	조 경
안전 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가 스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 스 금속재료시험 축 로 위험물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해 양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항로표지 잠 수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 수
건설 지원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비 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1992.03.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2004.12.3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2010.12.13

2. 1993. 3. 27 이전 취득한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3.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별표 3 제2호 가목의 자격지수를 말한다) 배점은 10점으로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및 별표 3에 따른다.

4.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전문분야 인정(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를 말한다)은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별표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5조제2항관련)

직무분야	학 과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 업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도시·교통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조 경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건설지원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비 고

1.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 50%이하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7조 관련)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 고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일반 건설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에서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2 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

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 미만	10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환경 관리자 · 공사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 용역감독	참여 기술자 ·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일반 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 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 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관리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지원	19.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0.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1.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2. 기타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자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설계, 건설사업관리(*)	사업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참여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에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 로	1. 토 공
2. 고속국도	2. 미장, 방수
3. 국 도	3. 석 공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4. 도 장
5. 공 항	5. 조 적
6. 댐	6. 비계·구조물해체
7. 간척·매립	7. 금속구조물창호
8. 단지조성	8. 지붕·판금
9. 택지개발	9. 철근·콘크리트
10. 농지개량	10. 철 물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1. 기계설비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2. 상·하수도설비
13. 지 하 철	13. 보링·그라우팅
14. 터 널	14. 철도·궤도
15. 발 전 소	15. 포 장
16. 쓰레기소각시설	16. 준 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7. 수 중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8. 조경식재
19. 산업시설	19. 조경시설물설치
20. 환경시설	20. 건축물조립
21. 저장·비축시설	21. 강구조물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2. 온실설치
23. 하 수 도	23. 철강재설치
24. 공용청사	24. 삭도설치
25. 송 전	25. 승강기설치
26. 변 전	26. 가스시설시공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통신·전력구	28. 온돌시공
29. 기 타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사/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배관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배관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건설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일반기계	기계 금형	기계가공 금형제작	메카트로닉스 일반기계 기계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전산응용기계제도 연삭 정밀측정 금형 기계가공조립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산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전자기기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토목	토질·지질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목구조		토목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항만및해안	항만및해안		토목	토목	
	도로및공항	도로및공항		토목	토목	
	철도·삭도	철도		철도토목 토목	철도토목 토목	철도토목

	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토목	토목	
	상하수도	상하수도		토목	토목	
	농어업토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시공	토목시공		토목	토목	석공
	토목품질관리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지적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건축	건축구조	건축구조		건축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	건축설비 건축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방수 온수온돌 건축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조적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실내건축	-		실내건축 건축	실내건축 건축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품질시험		건축	건축	
	건축계획·설계	건축사		 건축	건축제도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도시 ·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교통	교통		교통	교통	

조경	조경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시공관리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금속재료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축로
	소방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환경	대기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해양	해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항로표지 잠수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건설지원	건설마케팅	화공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건설정보처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관련학과 및 전공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냉동관련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용접	용접관련학과
	건설기계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열유체공학전공), 기계및산업공학과(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관관련학과, 농공학과(농업기계전공), 농업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용기계공학과(동력기계전공), 산업공학과(기계관련전공), 산업과학과(기계공학전공), 산업기계공학과(전공포함), 선박관련학과(전공포함), 자동차공학과, 자동화관련학과(전공포함), 정밀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및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철도차량관련학과(철도차량전공), 항공관련학과(전공포함)
	승강기	승강기관련학과
	일반기계	기계공학과(일반기계전공)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관련학과
	건축전기설비	공학연구과(전기공학전공), 산업관련학과(전기관련전공), 전기.전자관련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관련학과(전공포함), 전기전자제어공학과(전기공학전공)
	산업계측제어	산업전자학과(반도체전공), 전기전자공학과(전자공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	토질・지질	건설공학과(지반및구조공학전공), 건설관련학과(지반관련전공), 건축및토목공학과(수리및지반공학전공),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농공학과(농지조성및토질이공전공), 지구환경공학과(응용지질학전공), 응용지질학과, 지질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공학(수자원및토질공학), 토목공학과(구조및지반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구조및토질관련전공), 토목공학과(지반공학전공포함), 토목공학과(지반및수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구조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도로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측량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토질관련전공포함), 토목환경공학과(지반 또는 토질공학전공)

	토목구조	건설공학과(토목구조전공), 토목관련학과(구조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구조관련전공), 해양토목공학과(구조공학전공)
	항만및해안	건설.환경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토목해양공학과, 해양토목관련학과
	도로및공항	토목관련학과(도로관련전공)
	철도・삭도	철도관련학과(전공포함)
	수자원개발	토목공학과(수질원전공), 토목관련학과(수자원관련전공)
	상하수도	상하수도관련학과
	농어업토목	농공관련학과(전공포함), 농업토목관련학과(농공학전공), 생물자원공학부(농업토목전공), 농학과(농공학전공)
	토목시공	건설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설교통공학과(토목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설환경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건축토목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공학과(토목공학전공), 공학연구과(토목관련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토목공학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산업공학과(자원관련전공), 산업공학과(토목관련전공), 산업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산업과학계토목공학전공, 산업기술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생산기술공학과(토목공학전공), 자원개발학과,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암석연학전공),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과(전공포함), 토목건축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환경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수공학 또는 토목관련전공)
	토목품질관리	토목품질관련학과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리정보공학과, 측지공학과, 토목공학과(측량및상하수도공학전공), 토목공학과(측량및시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지리관련전공), 토목관련학과(측량 또는 측지관련전공),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템공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지적	지적학과, 토지정보공학과(지적)
건축	건축구조	건축공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공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관련학과(구조관련전공), 건축구조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설계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학및건축공학과(건축구조.재료시공전공)
	건축기계설비	건축공학과(설비관련전공),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건축설비공학전공)

	건축시공	건설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설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도시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토목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토목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계획학과(전공포함), 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관리학과(건축적공학전공), 건축설계학과(시공관리전공), 건축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환경공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환경학과, 공간환경공학과(건축학전공), 공학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공학연구과(건축관련전공), 산업공학과(건축관련전공), 산업기술관련학과(건축공학전공), 이공학연구과(건축학전공), 해양건축공학과
	실내건축	건축공학과(실내건축전공), 실내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디자인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장식과
	건축품질관리	건축품질관련학과
	건축계획 · 설계	건설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설계학과(건축설계전공)
광업	화약류관리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광산보안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광산관련학과(전공포함)
도시 · 교통	도시계획	건설공학과(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과(도시계획전공), 공간환경공학과(도시계획학전공), 국토개발학과, 도시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공학과(국토개발전공), 산업공학과(도시계획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도시계획및도시설계전공), 토목공학과(도시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도시 또는 지역관련전공), 환경설계학과(도시설계전공)
	교통	건설공학과(교통전공), 교통관련학과(전공포함),도시계획학과(교통관련전공), 도시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교통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교통학전공)
조경	조경계획	공간환경공학과(조경학전공), 관광조경학과 관광조경학전공, 녹지조경학과(조경계획및설계전공), 농학과(조경학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산림자원관련학과(전공포함), 생명자원과(조경학전공), 생명자원과학과(조경학전공), 임학과(전공포함), 조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계획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관리학과(조경학전공), 환경생태공학과(조경학전공), 환경설계학과(조경설계전공), 환경자원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조경관련학과(환경조경관련전공포함), 환경학과(조경계획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조경시공관리	원예관련학과(전공포함), 조경학과(환경원예전공)

안전관리	건설안전	공업경영관련학과, 산업공학과(전공포함), 산업시스템공학과(전공포함), 산업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위생과, 산업환경학과, 생산공학과(안전공학전공),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공업경영학과, 산업또는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소방	소방관련학과
	가스	가스관련학과
	비파괴검사	금속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	대기관리	건설환경공학과(환경공학전공), 관리과학과(환경관리전공), 대기관련학과, 산업공학과(환경관련전공), 산업기술공학과(환경공학전공), 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자연환경계획학과, 토목공학과(환경공학전공), 토목환경관련학과(환경공학전공), 환경.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과(대기및폐기물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대기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환경공학전공)
	수질관리	수질공학과, 환경관련학과(수질관련전공), 환경학과(환경독성학분야전공)
	소음진동	환경관련학과(소음관련전공)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공학과, 환경관련학과(폐기물관련전공)
	자연·토양환경	자연·토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해양	수산과학과,(해양학전공), 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경영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건설마케팅	마케팅관련학과, 홍보관련학과, 기계및산업공학과(산업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품질관리전공), 산업공학전공, 산업과학과, 섬유관련학과(전공포함), 화학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화학공학전공)
	건설정보처리	정보처리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비 고

1) 위 표의 00관련학과 인정에 대하여는 별표 2 학과의 범위 비고에 따른다.

2) 위 표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또는 복수의 전문분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학과 심의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회사 주소		(연락처 :)

해당학과의 신청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석 · 박사 학위 취득자에 한합니다)	
수신요청	유선(자택, 회사)	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으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학과의 신청직무분야 및 학과심의 처리 기준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제2항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 신청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5일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참여 사업	사업명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일
	공사종류	공법
	공사(용역)개요 (70자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 (단위 : 백만원)	

기술경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서명 또는(인)
1									
2									
3									
4									
5									

위와 같이 당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허가기관) 직인

유의사항

1.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및 책임정도 기재요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4호,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3 제3호 및 제4호를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발주청 확인은 해당기관의 장(건설공사와 관련한 실적관리 및 확인 권한 등을 재무관, 경리관 또는 계약담당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공무원 포함)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현재(변경후) 근무처	회사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주소 (전화 :)	

인수협회	
신청사유	
건설기술 경력증 미반납 사유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설기술경력증(해당자에 한합니다) 2. 대리인 · 우편 또는 FAX로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해당 건설기술자)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인수협회는 신청인의 이직 등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새로이 경력을 관리할 협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여만 합니다)
2. 신청사유는 이직 · 소속회사의 건설업 관련 면허 취득 등의 사유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대리인 신청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인적사항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표시)	[ ] 참여기간 [ ] 참여사업명 [ ] 발주자 [ ] 직무분야 [ ] 전문분야 [ ] 공사종류 [ ] 담당업무 [ ] 공 법 [ ] 직 위 [ ] 기 타
관련증빙 자료(표시)	[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 국외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 ]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 경력확인서 확인업체의 인감증명서(기 신고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 제외) [ ] 인감증명서(대리인신청 또는 우편신청에 한함) [ ] 사유서(업체 및 본인) [ ] 기 타 :
건설기술 경력증 미반납 사유	
수신요청	[ ] 자택전화 [ ] 회사전화 [ ] 휴대전화 [ ] 문자(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문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저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건설기술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시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은 경력증의 부정사용(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 이전 경력증의 사용을 말합니다)·대여(자격 또는 경력증)·도용 또는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급	경력증명서 [ ] 일반	부수
	보유증명서 [ ] 일반 [ ] 시설공사적격심사	부수
	제출처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찰내용 (시설공사 적격심사용)	공사명	
	발주청	공고일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자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인

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무/전문분야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쪽)

	성명	생년월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무/전문분야
31				41			
32				42			
33				43			
34				44			
35				45			
36				46			
37				47			
38				48			
39				49			
40				50			

조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해양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광업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통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저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4.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가 기록된 이동식저장매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6.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건설기술자만 가능합니다.
7.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8.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술자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찰내용	참여사업명(정식명을 기재)	
	사업발주처	접수마감일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자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인

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 고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 고
1				13			
2				14			
3				15			
4				16			
5				17			
6				18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첨부서류	1. 경력사항확인서 2. 시설공사 기성(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기제출 시 생략) 3. 기타 관련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저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2.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1. 자격 및 경력

부실벌점 :

성 명		근무부서(소속)		직 위	
생년월일	- (만 세)	최 종 학 교			
		학 교 명	학 위 명	졸업년도	전 공

자 격 증			* 해당분야실적		* 해당분야 전체 경력기간
분 야	종 류	취 득 일	건	금액(원)	

상훈 및 자격정지		* 세부 경력 기간 (일, 월)			
상 훈	자 격 정 지	실시설계 용역감독	조사용역, 공사감독	교육,연구, 시공	기 타

* 본 과업 참여 분야		* 본 과업참여 직위	

경 력 사 항						
참 여 기 간	사 업 명	발 주 청	참여당시		담당업무	비 고
			소속회사	직 위		

2.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전체, 최근 00 년간)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용역금액 (천원)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참여 분야	*직위		
계	건				천원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여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이 증명서 상의 *표시사항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

부실벌점 :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년 월
기술분야	건설기술자 종류 (자격증)	기술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일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담당업무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건설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술등급 란에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 제1호 건설기술자(일반)의 기술등급이 기재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분야별 참여일수 및 비건설 경력증명서

□ 분야별 참여일수

공사종류별 참여일수 현황		직무/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참여일수 합계	일	참여일수 합계	일

* 기술경력의 참여기간이 중복된 경우 참여일수 산정시 소수점이하를 절삭하여 공사종류별 참여일수 합계와 직무/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사종류별 참여일수 현황 중 공사종류를 2종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 후 합산 표기하였습니다.

□ 비건설 경력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자 격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학 력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훈련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상 훈			

비건설 경력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